

제5차 유엔 자유권 규약 시민사회보고서

2023. 9.12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119개 단체)

보고서 작성단체

『공권력 감시 대응팀』(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군인권센터, 『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녹색전환연구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사) 신나는센터,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경남퀴어문화축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다음: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미래당 성평등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 퀴어문화축제 기획단,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 집 (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 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호,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제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IQ, 전라북도 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제주권역 퀴어 커뮤니티 퀴여움QUTE,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인권위원회,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튜립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땀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수용자인권증진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십대여성인권센터, 오픈넷,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시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시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살롱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살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책대응모임』(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 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제주다크투어, (재)진실의 힘,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재단법인 동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난민인권네트워크』(TFC,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 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MAP,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한국이주민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장애포럼, 한국한부모연합 (총 119개 단체)

목차

서문	3
01 유엔의 지난 권고 및 견해 이행 현황은?	4
02 2015년 이후 인권증진,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발전은?	4
03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조치는?	6
04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는?	7
05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7
06 성소수자(LGBTI)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기 위한 조치는?	9
07 여성의 사회생활 참여와 여성리더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10
0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12
09 테러방지법이 엄격하게 ‘테러’에만 적용되는지?	15
10 사형제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	15
11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16
12 고문, 가혹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는?	17
13 군대 내 인권침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20
14 인신매매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22
15 비자발적 정신병원 입원에 따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2
16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23
17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을 접견하고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24
18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는?	26
19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27
20 국가안보를 위한 감시(사찰)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는?	28
2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조치는?	29
22 명예훼손 비범죄화, 국가보안법 제7조 개정에 대한 입장은?	30
23 공무원, 교사 등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는?	31
24 정당해산,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수용자의 선거권 제한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은?	34
25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36
26 이주민,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 근절,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는?	38
27 보편적 출생등록제 및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노력은?	40
28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자유권 침해	41
29 기후위기와 인권	42
30 10. 29 이태원참사로 인한 생명권 및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의 침해	43
31 집회의 자유 탄압 및 장애인 이동권	43
32 인터넷검열	44
33 언론의 자유	45
34 시민사회 탄압	45

서문

대한민국 1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검토의 일환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다섯 번째 검토입니다.

자유권규약은 국적, 인종, 성별,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또는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의 기본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약속입니다. 한국은 이 중요한 국제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러한 권리를 옹호하고 그 진전 상황과 남은 과제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자유권위원회는 4차 최종견해 채택 후 1년 이내에 양심적 병역거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평화로운 집회 등 세 가지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한국에 요청했습니다. 국제 NGO ICCPR 센터는 한국의 이행에 대해 각각 C, E, C 등급을 부여하며 5점 만점 중 2.6점을 주었는데, 이는 평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제 한국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규약에 명시된 권리의 침해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거둬진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형제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명예훼손 비범죄화 등 주요한 권고사항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훼손,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에 대한 폄훼 선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시민사회의 위축과 억압을 초래했습니다.

셋째, 우리 보고서는 특히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자 등 소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차별과 불평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긴급한 관심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0.29 이태원 참사, 기후위기 등 이슈 목록에 없는 중요 문제의 정보도 포함하고 업데이트했습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보고서가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옹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을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위원회가 우리의 우려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정중히 촉구합니다.

01 유엔의 지난 권고 및 견해 이행 현황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국가보고서 1]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수립에 시민사회의 의견은 물론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18번의 분야별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권리에 관한 내용은 전무하고, 미등록 이주민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공무원 및 실직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언급도 없다. 나아가 2022년에 이미 수립되었어야 할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8)에 대한 공론은 2023. 8. 현재 시작도 되지 않았다. 1년 넘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공백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국가인권기본계획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 부족과 더불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담은 인권정책기본법을 2021년 12월에 발의하였으나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5월 안에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정부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하여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라.
- 국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법률인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을 제정하라.

선택의정서에 따른 위원회의 견해 이행을 위한 조치 [국가보고서 5-6]

정부는 규약 선택의정서에 의거한 위원회의 견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견해 이행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자유권위원회의 2018. 7. 12.자 개인통보 2273/2013호 견해¹와 관련하여, 정부의 무대응에 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정부는 법원절차에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는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고, 당시의 조치가 정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2023. 6. 1.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² 당사자는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하였다.

- 당사국은 규약을 위반한 모든 사건에서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견해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고 이행하는 메커니즘과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라.
- 당사국은 위원회가 지금까지 발표한 견해의 피해당사자에게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라.

02 2015년 이후 인권증진,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발전은?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 [국가보고서 16]

헌법 제6조에 의하면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법원은

¹ CCPR/C/123/D/2273/2013

²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4262 판결

국제인권조약의 적용에 매우 소극적이고, 적용되는 몇 안 되는 경우도 단순한 언급에 그치고 있다.³ 양심적 병역거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에서 자유권 규약과 일반 논평이 언급된 것은 대법원 법정의견인 다수의견이 아니라 재판관들의 개인의견인 보충의견이다.⁴ 2018년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도 헌법 조항과 더불어 자유권규약의 조항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이다.⁵ 위원회가 최종견해에 반하거나(E), 이와 무관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C)고 평가⁶한 정부의 후속보고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다. 정부는 2021년말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체계 정비,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 기능 강화,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 노력,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발의했다.⁷ 하지만 2022년 대선 결과로 정부가 교체된 이후 이 법안을 입법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 정부는 국제인권조약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관을 포함한 법률가들을 위한 국제인권법 공식 재판편람을 발간하고, 국제인권조약과 일반논평 등을 법령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고, 법률가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국제인권법 교육 시스템을 확립하라.
- 정부는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인권정책 수립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의 이행을 보장하는 등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라.

산업안전 및 보건 [국가보고서 9-13]

정부는 안전교육, 안전조치 이행 점검 등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 및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22년판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자는 연평균 123.8명이다. 산재 사망률이 내국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 정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주노동자 산재 예방 종합대책 마련,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 강화하고 안전장치, 안전설비 등 지원대책 마련하라.
- 이주노동자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하라.

³ 사법정책연구원,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영 현황과 과제, 2020 참조.

⁴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판결.

⁵ 대구고등법원 2018. 9. 21. 선고 2018누3005 판결.

⁶ Human Rights Committee, Discontinuance of the follow-up procedure/request for additional information (letter dated 8 November 2018)

⁷ 법무부 보도자료, 국제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 12. 28.

외국인노동자 인권/ 고용허가제 [국가보고서 14-15]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 변경이 극히 어려워서 열악한 노동환경, 숙식환경 속에서 사실상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⁸ 그런데 7월 5일 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기존의 사업장변경 제한에 더해, 2023년 9월부터 입국하는 신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업장변경을 일정한 지역 내로만 제한하는 추가적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⁹ 이것은 직장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조치이다. 또한 2020년 겨울에 캄보디아 노동자가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 고용허가제 하에서 제공되는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했지만¹⁰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건축물’이 계속해서 숙소로 제공되고 있다.

- ILO 강제노동금지협약 준수하여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지역제한 조치 철회하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가설건축물 숙소를 금지하고 숙소 기준을 강화하라.
-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라.

03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국가보고서 19]

GANHRI-SCA는 2021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 선출을 위한 단일한 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절차에 따라 선출 할 것으로 권고하였으나 여전히 대통령, 국회, 대법원 모두 각각의 절차로 국가인권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파리원칙에 따른 충분한 자격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 결과, 2022년 10월, 여당이 추천하여 임명한 한 상임위원은 회의 등 공개된 자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¹¹을 하는 등 반인권적 발언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권고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도 훼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발표와 국가인권위원 사퇴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The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⁸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에 적용되는 여타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a) 가족결합을 용이하게 하고, **b) 사업장 변경을 못하게 하는 제한을 없애고** c)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연장하고 d) 다른 비자종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CERD/C/KOR/CO/17-19 para 10.

⁹ 한겨레, “정부, 이주노동자 ‘지역 이동’ 제한, 9월 입국자부터 적용”, 2023. 7. 5.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46848?sid=102>

¹⁰ GLOBE, “Death in Greenhouse”, 2021.10. 15. <https://southeastasiaglobe.com/death-in-a-greenhouse/>

¹¹한겨레, ‘혐오발언’으로 인권위에 진정된 인권위원, 2023. 5. 2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2900.html

Institutions (ANNI) 인권네트워크는 국가인권위원장 앞으로 공개서한¹²을 보내 우려를 전달하였다. 2021년 GANHRI-SCA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¹³

- 정부와 국회는 GANHRI의 권고에 따라, 단일후보선출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정책기본법을 제정하라.
- 정부와 국회는 GANHRI의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하라.

04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조치 [국가보고서 20-26]

한국 정부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법무부가 2021년 발간한 기업과인권 길라잡이¹⁴는 기업에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인권환경실사와 관련된 정책 및 법안발의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가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였다.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 핵심이해관계자가 구조적으로 대표되거나 정규적이고 유의미한 직접 소통 채널을 가져야 한다는 2021년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 동료평가보고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¹⁵ 한국 NCP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를 NCP 구성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소통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NCP의 구조적 결함은 기업 친화적인 결정의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출국 공관의 노무관리 고충 처리 전담반은 한국 사업주를 위한 기관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에 근거한 진정절차는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기회로 활용되기 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

- 정부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실현을 위한 인권환경실사법을 제정하고, 기업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공급망 및 국경을 초월하여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05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가보고서 34]

¹² [\[Open Letter\] The anti-human rights behaviour of Lee Choong-sang, a Standing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FORUM-ASIA](#)

¹³ [NHRCK Receives 'A' status in GANHRI Accreditation Review < Press Releases < Main Activities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fo Korea](#)

¹⁴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51&fn=temp_1672625107878100

¹⁵ OECD (2021),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National Contact Point Peer Reviews: Korea, <https://mneguidelines.oecd.org/ncppeerreviews.htm>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2015년 위원회 권고 외에도 사회권위원회,¹⁶ 여성차별철폐위원회,¹⁷ 인종차별철폐위원회,¹⁸ 아동권리위원회¹⁹ 등 모든 조약 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다. 2023년 제4차 UPR에서 총 17개국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UPR 권고에 대해 정부는 단기간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²⁰ 보고 전 질의목록(LOIPR)에 대해서도 정부는 효과적인 차별금지법제 정비 방안을 검토 할 예정이라고 답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 캠페인 등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

- 정부와 국회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4건의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즉각 심사하라.
- 삶의 모든 영역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차별금지사유에 따른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며 공공 및 민간 주체가 저지른 직간접적 차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국가보고서 29-30]

2021년 실시한 남북하나재단²¹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말투, 생활방식의 차이, 세금부담 가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 차별 또는 무시를 경험하고 있다. 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살충동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13.3%로 일반국민 5.2%의 2.5배에 달했다.²² 보호 받기 위해 온 모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유누리센터²³에서의 법률적 근거 없는 구금 및 조사,²⁴ 신변보호관제도를 통한 모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찰의 상시적인 감시²⁶ 등은 차별의 낙인과 차별의식의 내재화를 초래하고 있다.

- 정부는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입국과 동시에 장기 구금 및 강압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누리센터를 폐지하고, 수십년간 북한이탈주민들을 감시해 온 신변보호관제도를 폐지하라.

¹⁶ E/C.12/KOR/CO/4, para23.

¹⁷ CEDAW/C/KOR/CO/8, para13.

¹⁸ CERD/C/KOR/CO/17-19, para5.

¹⁹ CRC/C/KOR/CO/5-6, para. 17.

²⁰ A/HRC/53/11/Add.1, para 8(a), The Government face difficulties in taking immediate actions in a short period of time.

²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통일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대외명칭

²² 남북하나재단, 2021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2022.

²³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대외명칭, (구)정부합동신문센터

²⁴ 특별한 혐의가 없을 경우 최장 120일, 혐의점 발견시 최장

²⁵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실, 정의당 정책위의장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2016. 11. 29. 참조.

²⁶ 경찰청, 인권친화적 탈북민 보호를 위한 탈북민 신변보호 제도 개선 세미나, 2019. 6. 12.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일반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통합시키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을 방지 할 수 있는 보호제도를 시행하라.

06 성소수자(LGBTI)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기 위한 조치는?

LGBTI [국가보고서 38-43]

지난 4차 권고 이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법제도의 차별은 해소되지 않았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대에서의 동성 간 성적 접촉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조항이다.²⁷ 군은 여전히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 역시 징계할 수 있다.²⁸ 2022년 4월 대법원은 병영 밖에서 성적 접촉 행위를 한 두 군인에 대해 무죄 판결하였으나,²⁹ 법 개정을 통해 군형법 제92조의 6은 폐지되어야 한다.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위한 대법원예규³⁰는 생식능력이 없을 것, 외부성기수술을 받았을 것, 혼인 중이 아닐 것,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등 침해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동성 부부는 법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 2021년 한 동성부부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였고³¹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³²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정부는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을 범죄화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 동성부부가 경제적·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민법 개정 등 법제도를 개선하라.
-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 있어 생식능력제거, 외과수술,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등 침해적인 요건을 폐지하라.
- 정부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라.

²⁷ Article 92-6 (Disgraceful Conduct) A person who commits anal sex or other disgraceful conduct on a person falling under any provision of Article 1(1) through (3)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u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²⁸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3은 ‘추행’을 별도 징계사유로 두고 ‘성희롱’과 같은 징계양정을 규정했다.

²⁹ The Guardian, “South Korea’s highest court overturns military convictions of two gay soldiers”, 22 April 2022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apr/22/south-koreas-highest-court-overturns-military-convictions-of-two-gay-soldiers>

³⁰ Guidelines on the Clerical Processing of Cases of Transsexuals’ Application for Legal Sex Reassignment (revised on 2 Feb.2020 [Established Rules on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No. 550; implemented on 16 Mar, 2022]; in Korean).

³¹ Yonhap News, “Same sex couple loses suit against state health insurer over spousal coverage”, 07 January 2022 <https://en.yna.co.kr/view/AEN20220107006200315>

³² Reuters, “South Korean gay couple sees court win as breakthrough for equality”, 28 February 2023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south-korean-gay-couple-sees-court-win-breakthrough-equality-2023-02-27/>

07 여성의 사회생활 참여와 여성리더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의 세계에서 성차별 [국가보고서 47-48]

성별임금격차는 구조적 요인이지만 현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전제 아래 성평등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모든 노동정책은 친기업적이며 성평등에 반하는 것들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 주당 69시간 노동제 도입, 최저임금 미만의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등의 정책을 면밀한 검토없이 마구잡이로 발표하며 노동계와 대립하고 있다. 한국의 하루평균 무급돌봄노동시간은 남성 49분, 여성 215분으로 격차가 크다.³³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초장시간 노동이 도입된다면 지금도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최근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5%인상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이 모든 정책은 무급돌봄노동의 책임을 떠맡은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 정부는 일터에서의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채용성차별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포함한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라.

공공/민간영역에서의 여성대표성 [국가보고서 49-51]

(1)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2001년 신설되어 부처 형태로 20여 년째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전담부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적은 예산과 인력(정부예산 중 0.24%(2023)³⁴, 279명(2022)³⁵)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선시기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고, 부처의 역사적 소명은 다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고, 2022년 10월, 정부 여당의 당론 성격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³⁶ 한편, 정부는 이 안에 대해 “여가부가 수행하던 정책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³⁷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이 자명하며,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의

³³ Employment : Time spent in paid and unpaid work, bysex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54757>

³⁴ 기획재정부, 부처별 예산 현황(2023) <https://www.data.go.kr/data/15095848/fileData.do>

³⁵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가족부 직제

<https://www.law.go.kr/lsByllInfoPLinkR.do?lsiSeq=245943&lsNm=%EC%97%AC%EC%84%B1%EA%B0%80%EC%A1%B1%EB%B6%80+%EC%A7%81%EC%A0%9C&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21213&bylEfYdYn=Y>

³⁶ 이 법안은 2023년 2월, ‘여가부 폐지’ 내용은 제외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현재 여성가족부는 유지되고 있지만 해당 안이 국회에서 아직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³⁷ UN 여성폭력특보 및 여성차별실무그룹의 공개 서한에 대한 한국 정부 답변서, 2023.7.21.

<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File?gld=37621>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을 갖고 정책 심의·의결권, 입법권을 갖는 것과 ‘본부장’이라는 국무회의 배석 수준으로 장관에게 오롯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것은 엄연히 다르다. 또한 정부조직법상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국회 상임위원 여성가족위원회가 사라진다. 결국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³⁸

-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안을 폐기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바로잡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강화 방안을 제시하라.

(2) 여성대표성

정부는 「제2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2018-2022)」을 통해 매년 목표에 따른 현황을 점검해왔다. 2022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11.2%, 중앙행정기관 본부 과장급(4급 이상) 26.4%, 지방자치단체 과장급(5급 이상) 27.4%, 공공기관 임원 23.6%, 지방공기업 관리자 12.9%, 국립대 교수 20.2%, 군인 간부 9%, 경찰 관리직 5.7%이 여성³⁹인 수준에 그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달성했더라도 목표치 자체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치 대표성도 마찬가지로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국회의원 57명으로 19%라는 비율을 기록하여 OECD국가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비율은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인 25.6%(2021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⁴⁰

- 정부는 모든 공공부문(중앙 및 지방정부)과 민간 영역의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을 의무화하고,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성별할당제 30% 의무화, 의회 선거에서 각 정당 후보자 추천 시 특정 성 60%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관계법 개정을 속히 추진하라.

0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임신중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상황 [국가보고서 81-82]

³⁸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에 따라 이는 벌써부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향신문, “또 ‘여성 지우기’ 나선 여가부, 10년 추진한 정책 명칭서 ‘여성’ 삭제”, 2023.7.20.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7201011001>

³⁹ 문미경, 김선아, 김예솔, 손문금,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18-’22) 추진현황 및 향후 목표율 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

⁴⁰ OECD, women in politics, <https://data.oecd.org/inequality/women-in-politics.htm>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임신중지를 재생산권의 관점에서 국가가 여성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허용시기/사유/절차와 요건을 포함하는 제한과 통제를 담은 기만적인 입법안을 내놓았고 여성들과 시민사회⁴¹, 국가인권위원회⁴²도 이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2023년 현재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등 국가가 어떠한 권리 보장 정책도 내놓지 않는 가운데 한국의 여성들은 세계보건기구가 안전성을 인정한 유산유도제도 사용하지 못하고 불법약물 사용과 임신중지의 지연으로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⁴³ 피임과 임신, 임신중지, 출산과 양육이라는 재생산권의 전 과정에서 차별없는 접근과 권리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 정부는 임신중지가 비범죄화 되었음에도 임신중지를 여성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라.
- 피임을 포함하여 임신과 임신중지, 출산, 양육에 이르는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여성폭력 [국가보고서 55-75]

여성폭력피해자들의 사법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인해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폭력 신고율은 압도적으로 낮고,⁴⁴ 신고하더라도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조항이 ‘가정유지’에 방점을 두고 있기에⁴⁵ 가정폭력의

⁴¹ “법무부 ‘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처벌조항 유지에 여성계 반발”.투데이신문.2020.10.27.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08>

⁴² “낙태죄 존치는 인권침해”...인권위, 형법 개정안 등 재검토 권고”.법률신문.2020.12.31

<https://www.lawtimes.co.kr/news/166954>

⁴³ “아직도 법 테두리 밖... “마약처럼 낙태약 구한다”” sbs뉴스.2023.04.1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51822

⁴⁴ 가정폭력 피해자 중 0.8%만이 경찰에 신고하고(여성가족부,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성폭력 피해자 중 2.6%만이 경찰에 신고한다(2022 여성가족부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⁴⁵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소율은 10.1%⁴⁶로 사실상 형사처벌되지 않고 있다.⁴⁷ 한편,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검찰에 송치된 스톱킹 피의자 중 구속된 건수는 4.8%⁴⁸에 불과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⁴⁹ 국제사회가 강간죄의 구성요건⁵⁰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나⁵¹ 정부는 강간죄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⁵²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강간 피해 상담의 71.4%(2019), 62.5%(2022)가 직접적 폭행·협박이 없는데도, 폭행·협박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여성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폭력예방교육은 형식적으로 진행⁵³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⁴⁶ <가정폭력 사건 처리 현황>, 정춘숙 의원실, 2021년 경찰청, 법무부 제출자료, 2021.09

⁴⁷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검사는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9조의2)하거나 보호처분을 위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제9조)할 수 있다. 2021년 경찰청 가정폭력 사법처리현황에 의하면 가정폭력 검거인원 53,985명 중 46%(24,867명)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대법원 2022 사법연감에 의하면, 2021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인원은 19,321명이었으며, 이 중 약 44.5%(8,603명)는 불처분되었고, 처분을 받더라도 대부분은 상담위탁(24.8% 4,803명) 및 사회봉사·수감명령(11.4%, 2,208명) 위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해 접근행위제한은 0.1%(33명)에 불과했고 친권행사 제한 및 감호위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21년 가정보호사건 죄명별 접수 현황(법무연수원, 2022 범죄백서, 2023.)

- 상해·폭행 74.8%(17,456명), 협박 12.1%(2,827명), 재물손괴 11.4%(2,652명), 기타 1.7%(384명), 유기·학대·아동학사 0.0%(6명)

■ 2021년 가정보호사건 처분 현황(법무연수원, 2022 범죄백서, 2023.)

- 보호처분 54.3%(10,483명), 불처분 44.5%(8,603명), 기타(타법) 1.2%(235명)

- 보호처분 중 1호(접근행위제한처분) 0.2%(31명), 2호(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행위 제한처분) 0.0%(2명), 3호(친권행사제한처분) 0.0%(0명), 4호(사회봉사와 수감명령 처분) 11.4%(2,208명), 5호(보호관찰처분) 7.0%(1,357명), 6호(감호위탁처분) 0%(0명), 7호(치료위탁처분) 0.6%(116명), 8호(상담위탁처분) 44.5%(8,603명).

⁴⁸ 권인숙 국회의원이 받은 법무부 제출 자료(2022) 중 ‘스토킹처벌법 접수 및 처리현황’에 의하면 2021년 10월, 스톱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2년 6월까지 검찰에서 처리한 스톱킹 사건 3,182건 중 피의자가 구속된 건수는 4.8%에 불과했다.

⁴⁹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19번 문단)

⁵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⁵¹ “부부간, 지인, 데이트 강간을 포함하여 성범죄의 정의는 자유로운 동의가 없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며 강압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35호 제29조(e), 2017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부부강간을 명확하게 범죄로 규정할 것”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의 제8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3조 (a)

⁵² 2023년 1월,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를 추진 과제로 포함했다가 법무부의 반대로 약 9시만에 기존 계획을 철회했다. 결국, 비동의 강간죄 신설안은 윤석열 정부의 양성평등정책 세부 과제에서 제외되었다. 한겨레, ‘비동의 강간죄’ 신설, 윤석열 정부 정책과제서 결국 빠졌다, 2023.07.24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01508.html>

The Korea Times, Is non-consensual sex not rape?, 2023.02.01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3/07/113_344628.html

⁵³ 2020년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했다. 이후 2022년 10월 5일,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 실시율이 99.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예방교육 현황 통계에 따르면 58.6%가 개인별 온라인 교육 수강, 11.8%가 비디오 시청 등의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여성가족부 성희롱실태조사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비⁵⁴, 의료비 및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⁵⁵ 자립지원금과 주거지원⁵⁶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성평등 관점으로 여성폭력근절 및 예방 정책과 추진체계를 강화하기는커녕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⁵⁷하고, 각종 중장기 계획 및 통계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삭제⁵⁸하고 있다.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조항을 '가정유지·보호'가 아닌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으로 개정하라.
- 「형법」 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하라.

예방교육현황, 국가통계포털) 뿌리 깊은 성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단 4시간의 일방향적 교육 시청으로 방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를 성과라고 발표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 또한 매우 문제적이다.

⁵⁴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비용이 매우 부족하다. 2023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1인당 구조비용액이 총 5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분안 사건 150만원, 재정 및 항고 신청, 기타 분안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수임료가 4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가해자의 역고소, 중복 피해, 엄격한 성폭력 구성요건 등으로 피해자 변호사의 수임 부담은 크지만, 이처럼 지원 한도가 매우 적어 지원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연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⁵⁵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인원은 극히 일부로 추정된다. 2020년 기준 가정폭력 112신고는 221,824건, 전국 가정폭력 상담은 230,578건이지만, 보호시설 입소자 수는 1,702명에 불과하다. 또한, 보호시설 입소자 수는 2016년 3,415명, 2018년 2,704명, 2020년 1,702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년도 상반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2022).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대부분의 자립지원제도에 접근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⁵⁶ 쉼터에서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자립지원금 예산은 2022년 기준, 14억 천만 원에 불과하며(여성가족부,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각목명세서', 2022), 이는 전국 65개 쉼터(여성가족부, '2022년도 상반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2022)에서 1인당 500만 원(여성가족부, 2022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22)을 지원한다고 계산했을 때 한 쉼터마다 평균 약 4명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금액이다. 2021년 한 해 쉼터 입소자 수가 한 개의 쉼터에 평균 23.8명(여성가족부, '2022년도 상반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2022)이 입소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립지원금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자의 경우, 퇴소 시점 전후 2개월 내 5백만 원의 퇴소자립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만 19세 이상 도달한 자가 퇴소할 경우에만 지급되어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다.(여성가족부, 2023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⁵⁷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2022년 10월,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시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은 윤석열 정부 기조 아래 정치적 도구로서 다시 시도될 우려가 있다.

여성신문, [윤 정부 1년, 성평등은 어디로] '여성가족부 폐지', 이젠 방향 전환 모색해야 할 때, 2023.05.11,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682> Korea JoongAng Daily, Yoon gov't will scrap Gender Ministry, 2022.10.06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2/10/06/national/socialAffairs/korea-gender-ministry-ministry-of-gender-equality-and-family/20221006182655993.html>

⁵⁸ 한겨레, [단독] 행안부, 지자체 평가 때 '성평등 지표' 삭제 추진, 2023.07.24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01548.html

경향신문, 또 '여성 지우기' 나선 여가부, 10년 추진한 정책 명칭서 '여성' 삭제, 2023.07.20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7201011001>

- 여성폭력 근절 및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성평등 관점에 입각한 독립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라.
- 여성폭력 근절 및 예방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비, 의료비, 자립지원금, 주거지원을 확충하라.

09 테러방지법이 엄격하게 ‘테러’에만 적용되는지?

테러방지법 [국가보고서 83-86]

정부는 테러와 관련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다른 법률의 엄격한 절차 아래서만 정보 수집이 가능하며,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가 충분하다고 답변한다. 그러나 ‘테러위험인물’, ‘대테러활동’, ‘대테러조사’ 등 개념은 모호하여 정보기관에 의해 무한정 확장될 수 있다.⁵⁹ 또한, 다른 법률의 절차가 대테러활동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영장없는 정보수집이 가능하고,⁶⁰ 국가정보원장이 통제없이 대테러조사 및 추적을 할 독자적 권한도 허용되고 있다.⁶¹ 인권보호관은 정부 소속이며, 단 1명이기 때문에⁶²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장치로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 정부는 영장없는 광범위한 정보수집 등 국가정보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을 폐지하라.
- 대테러활동에 대한 독립적 감독 절차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10 사형제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

사형제 [국가보고서 87]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 된 이후, 25년 넘게 사형집행이 없었다. 정부는 2020년과 2022년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 표결⁶³하는 것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내외에 공식 확인하였다. 그러나 세 번째로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인 헌법재판소에서 2022년 7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정부는 “사형제도의 존재 여부가 인권국가를 결정하는

⁵⁹ Article 2 3., 6., 8. of Act On Counter-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available at: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57493&lang=ENG

⁶⁰ Article 7 (1)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vailable at: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lang=ENG&hseq=59856

⁶¹ Article 9 (3) and 9 (4) of Act On Counter-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available at: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57493&lang=ENG

⁶² Article 7 (1) of Act On Counter-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available at: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57493&lang=ENG

⁶³한겨레, ‘사형제 모라토리엄’ 문재인 정부 이어 윤석열 정부도 찬성 표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2043.html

기준이 아니”⁶⁴라며 사형제도 폐지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검찰은 지속적으로 사형을 구형하지만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없다. 2022년 8월 현재, 총 59명의 사형수가 있고 이중 법무부 교정시설에 55명, 군 교정시설에 4명이 수용되어 있다.

- 정부는 사형집행 중단 모라토리엄을 공식 선언하고 모든 사형수들을 무기수로 감형하라.
- 국회는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즉각 비준하라.

11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살 [국가보고서 88-90]

정부는 그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 자살가능성이 높은 집단별 맞춤형 상담을 언급하고는 있지만⁶⁵ 2017년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에서 권고한 바 있는 교육 및 노동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 노인 빈곤, 그리고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집단이 겪는 차별과 증오 발언 등 사회적 근본 원인을 다루는 조치는 전무하다. 정부는 자살예방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한다고 계획은 발표하고 있으나, 2018년에 목표한 2022년 10만명당 자살자수 17명에 근접하기는 커녕 26명으로 더 늘어난 상태이다.⁶⁶ 지속적인 자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의 0.01%만 책정하는 상태이다.⁶⁷ 자살예방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지역사회 현장에서의 구체적 역할이 중요한데,⁶⁸ 정부는 자살예방사업을 중앙집권화하여 통제하고 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일에는 미온적이다.⁶⁹ 현재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자살 관련 정보만으로는 지역사회의 현실에 맞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⁷⁰

⁶⁴ 법조신문, “인간 생명권 존중” vs “공익 위해 불가피”... 현재, 사형제 공개변론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5319>

⁶⁵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2023. 4.) 29-34쪽 참조.

⁶⁶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자살예방기본계획 \(kfsp.or.kr\)](http://kfsp.or.kr) 국가는 계획한 자살예방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2018년 당시 2022년 목표를 10만명당 17명으로 목표했으나, 현재 2021년 10만명 자살자가 26명으로 더 증가한 상태이다.

⁶⁷ 중앙일보, ‘극단적 선택 OECD 1위인데, 예방엔 예산의 0.01% 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39029#home> 지자체별 차이도 커서 인원 4명에 2억이 채 안되는 센터들이 대부분이고, 2021년도 전체 예산 중 자살예방 예산은 368억원, 0.0007%로 보고서 문서의 계획은 모두 실행되기 어렵거나 형식적으로 실행될 뿐이다.

⁶⁸ WHO, Preventing suicide: A global imperative (2014) 참조.

⁶⁹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22호,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51-52쪽. 복지부는 자살예방정책과, 국민통합위원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같은 중앙정부의 상층이나 부처에서만 조직과 예산을 확대함.

⁷⁰ 고려대학교 의료원 산학협력단, 자살예방 통계구축 방안 연구, 2018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96687>

- 정부는 억압적인 교육과 노동 환경, 빈곤, 혐오와 차별 등 자살의 사회적 근본 원인을 다루는 조치를 실행하라.
- 정부는 자살예방 예산을 확대하고, 각 지자체에게 필요한 정보와 권한을 제공하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라.
- 정부는 자살에 관한 통계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그 동향을 즉시 알려 자살예방 사업을 지원하라.
- 정부는 실효성있는 자살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라.

12 고문, 가혹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는?

고문 및 가혹행위의 처벌 [국가보고서 92-93]

정부는 고문 및 가혹행위를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항들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위 법률조항들이 처벌하는 행위는 협약상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을 포함하지 못하고, 처벌의 대상도 일부 법집행공무원들로 한정된다.⁷¹

- 정부는 협약상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라.

밤샘 조사의 활용 제한 [국가보고서 94]

⁷¹ Article 124 of Criminal Act(Unlawful Arrest and Unlawful Confinement) (1) If a person who performs or assists in activities concerning judgment, prosecution, police, or other functions involving the restraint of the human body, arrests or imprisons another by abusing his or her official authority,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and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ten years.

Article 125 of Criminal Act (Violence and Cruel Act) A person who, in performing or assisting in activities concerning judgment, prosecution, police, or other functions involving the restraint of the human body, commits an act of violence or cruelty against a criminal suspect or against another person while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and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ten years.

Article 4-2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Aggravated Punishment of Arrest and Confinement) (1) Any person who commits a crime provided for in Article 124 or 125 of the Criminal Act, resulting in the injury of any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of not less than a year.

(2) Any person who commits a crime provided for in Article 124 or 125 of the Criminal Act, resulting in the death of any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n indefinite term or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경찰청과 검찰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조사를 금지하면서도 폭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조사의 일부인 조서열람절차, 구속 신청 여부 판단을 위한 경우, 사건의 성질상 심야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등 폭넓은 예외상황을 규정하여 사실상 밤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⁷²

- 정부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외에 심야조사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

고문범죄 피해자의 재활, 보상 등 구제와 지원 [국가보고서 95-98]

고문 및 가혹행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특별법에 근거가 있거나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에게 한정하여 인정되고,⁷³ 소멸시효 적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제한받고 있으며,⁷⁴ 많은 고문 및 가혹행위가 범죄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조사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언급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지원은 형사법상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접 당사자와 직계가족, 형제자매에게만 보장되기 때문에⁷⁵ 시효 및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고문 및 가혹행위의 피해자들과 직계가족과 형제자매가 아닌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국민에게만 적용되고,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상호보증에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상호보증의 증명 책임을 피해 외국인에 두어 사실상 대부분의 외국인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고문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은 현재 국정과제에서 제외되었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지

⁷²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⁷³ Article 2 of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IMPAIRED REPUTATION

⁷⁴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5202_36126.html

⁷⁵ Article 3 (1) of CRIME VICTIM PROTECTION ACT

않고 있다.⁷⁶ 현재 건립 중인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는 올해 예산이 35% 수준으로 삭감되었고,⁷⁷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1945년 이전 고문피해자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⁷⁸

- 정부는 고문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포함하여 고문 및 가혹행위 피해자 모두에 대해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국제기준상 피해자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확대하라.
- 고문 및 가혹행위 피해자의 권리행사에 있어 시효 적용을 배제하라.
- 모든 고문 및 가혹행위 피해자가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의 치유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

고문 및 가혹행위 혐의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메커니즘 [국가보고서 99-102]

정부가 언급한 법무부 인권국 인권침해신고센터, 검찰청 감찰조직은 법무부와 수사기관 산하 기구이고, 그 업무가 피해자의 관점에서 진실규명과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도 아니므로 고문 및 가혹행위 혐의 조사를 위한 독립적 메커니즘이라 볼 수 없다. 정부가 언급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문 및 가혹행위가 아닌 인권 전반에 대한 독립적 조사기구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방문조사 등 고문 및 가혹행위 조사의 역할을 일부 하고 있지만, 충분한 재정적·물적·인적자원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고, 미인가 보호시설 등 일부 시설들이 조사의 범위에 배제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⁷⁹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나지 않은 사건만 조사하고,⁸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만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⁸¹ 모든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해 조사권한을 가지지도 않는다. 또한, 공소시효가 도과한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국가예방기구의 설립을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

⁷⁶ 대한민국 대통령실, 120대 국정과제 https://www.president.go.kr/affairs/gov_project

⁷⁷ 첫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반쪽짜리 센터 되나, <http://www.ikbc.co.kr/article/view/kbc202308240069>

⁷⁸ A/HRC/54/24/Add.1, para. 144.

⁷⁹ Article 2 2.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defines “confinement or caring facility” as “(a) Prison, juvenile prison, detention center and its branch, protective custody offic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y, juvenile reformatory, and Juvenile Classification and Examination Center, (b) Detention cell and facility where a judicial police officer investigates, detains, and accommodates persons in order to perform his/her duties; Military correctional institution (including its branch office and detention facility for detainees pending trial); Foreigner detention center; Facility for caring for many persons (referring to a facility for protecting and accommodating many persons, which i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facilities that stipulates in the Presidential Decree are approved protection facilities.

⁸⁰ Article 32 (1) 4.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⁸¹ Article 30 (1) 1.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 정부는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고문 및 가혹행위 혐의 조사, 오랜 기간 전에 발생한 고문 및 가혹행위, 사인에 의해 발생하는 고문 및 가혹행위를 포함한 모든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한 조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
-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

13 군대 내 인권침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군대 내 인권침해 [국가보고서 44-46, 110-115]

해마다 거의 5만여 건의 고충상담이 군 내부에서 이루어지나,⁸² 군 부대 지휘관이 가해자/피해자 전출, 단순 징계, 사적 사과로 무마하기도 하고, 신고자를 회유·압박하기도 한다⁸³. 법률상 신고자 보호만 의무이고 피해자는 아니다.⁸⁴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나 다른 징계를 받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⁸⁵ 성폭력을 신고해도 실형 선고율이 낮다.⁸⁶ 2022년 7월부터 군대 내 모든 성범죄는 민간에서 수사하고 재판을 하지만 2차 가해 범죄는 군대 내에서 수사하고 재판한다. 2022년 7월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었으나 인력과 권한이 턱없이 부족하다.⁸⁷ 정부는 부대관리훈령을 통해 장병들의 동성애 성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훈령이 온전히 준수되지는 않고 있다. 아직 성소수자 인권 교육은 형식적이고⁸⁸ 여전히 성소수자 복무 정책은 없다. 성소수자 여군의 피해도 심각하다.⁸⁹ 한편,

⁸² 군 내부 상담 창구인 국방헬프콜은 국방부 조사본부(군사경찰) 소속이다. 참고로 인구감소와 병력감축으로 인해, 2017년엔 병력이 60만 명이었으나 2022년 50만명 선으로 줄었다. 2022년 7월과 2023년 7월 국방부 정보공개 자료(9591792, 11036681)

⁸³ 2022년 8월 육군 GOP에서 상병이 이병이 업무에 미숙하다며 괴롭혔다. 소대장은 가해자를 두둔하며 피해자에게 폭언했다. 피해자는 11월 정신병동에 입원했다.

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4271328001#c2b. 2020년에도 해병대에선 피해자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선임 4명이 후임을 6개월간 괴롭힌 사건이 발생했었다. 피해자는 가해자 중 3명이 전역한 후에야 신고할 수 있었다. 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901023500641?srst=I&d=Y.

⁸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신고자 보호) 제①항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⁸⁵ 2022년 여름 발생한 사건으로 공군 15비 여군 피해자는 남군 가해자의 강요로 다른 남군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갔는데, 2023년 3월 공군 군검찰은 이를 주거침입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피해자는 2023년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n.yna.co.kr/view/AEN20220802006500315.

⁸⁶ 2022년 기준 123건의 성범죄가 기소되었고 약 65%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단지 13%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koreapro.org/2023/04/how-hierarchy-and-toxic-masculinity-fuel-sexual-abuse-in-south-koreas-military/

⁸⁷ 2023. 6. 29.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건 처리율’은 74.2%가 상승했으나 그 대부분은 ‘미인용’으로 결정된 것이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총 489건 중 인용은 47건으로 약 10%였다. 그러나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852건이 접수돼 8% 정도인 69건만 인용되었다.

⁸⁸ 심지어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6년 표준교재에서는 “동성간 성행위는 처벌된다”는 내용을 다른 설명없이 담았고, 2023년도 표준교재는 훈령 조문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⁸⁹ 2010년 해군 여군 대위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된 남자 상관 A로부터 수차례 ‘교정강간’ 당했다. 이

2021년 2월 육군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당한 하사가 사망했으나 육군은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⁹⁰ 군인의 ‘영내폭행’이 비친고죄화 되었으나⁹¹ 법률상 사각지대가 있고, 군내 폭력은 가볍게 다뤄진다.⁹² 군대 내 자체 인권교육은 대부분 다중 강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인권전문가가 아닌 지휘관 등에 의해 이루어질 때도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군인권교관은 다른 업무와 겸직이라 전문성이 부족하다.⁹³ 의무적 성인지 교육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성폭력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⁹⁴

- 정부는 군대 내 인권 및 성인지교육을 세분화, 전문화, 의무화하고, 사망한 트랜스젠더 하사의 죽음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고 성소수자 포용적 공개 복무 정책 도입하라.
- 정부는 병영생활상담관의 신분을 안정화하고 군사경찰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에서 군 지휘관 개입을 차단하라.
- 정부와 국회는 군인권보호관 조사 인력을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하라.

14 인신매매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인신매매 [국가보고서 111-126]

피해사실을 알게 된 함장 B가 다시 피해자를 ‘교정강간’했다. 2018년 고등군사법원은 각 무죄를 선고했으나 2022년 대법원은 B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폭행·협박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성적 지향은 간과하고 A는 무죄를 선고했다. 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37221.html.

⁹⁰ AL KOR 4/2020을 참고하라. 2022년 4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순직 권고했으나 12월 육군은 비해당 결정했다. 2023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순직을 권고했다.

⁹¹ 2019년 4월부터 2달간 육군의 한 병사의 경우 선임들과 같이 외출을 나가서 괴롭힘을 당했다.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03500052&wlog_tag3=naver.

⁹² 2020년 국회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 6월까지 공식 신고된 군내 구타, 가혹행위 사건은 4,275건이었다. 폭력 사건 중 28.9%는 불기소됐고, 0.09%만 실형이 선고됐다. 2011년에서 2015년 6월까지의 발생 폭력 사건 수 3,643건에 비해 600여 건 증가했음에도, 실형 선고율은 1.4%에서 90% 하락한 것이다.

www.news1.kr/articles/?4096416. 한편, 국회입법조사처(2021)의 “군 인권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NARS, Vol. 98)에 따르면 ‘구타 행위는 원인 제공자가 있다’, ‘운동을 하면 성범죄가 예방된다’는 내용이 교육 교재에 포함되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⁹³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은 군대에서의 인권훈련을 할 때, 시민사회와 협력하여야 하고, 일회적으로 일부만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A/HRC/15/28, para. 43 (d) (i), (iii)). 또한 UN인권이사회는 모든 계급의 군인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A/HRC/RES/12/4, para. 2) 확인한 바 있다.

⁹⁴ 2023년 UPR 권고(A/HRC/53/11, paras. 139.65-66)를 참고하라. 권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연간 400여 건의 군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https://www.nytimes.com/2021/10/15/world/asia/south-korea-military-sexual-assault-suicide.html>.

2022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은 인신매매 ‘등’ 범죄에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인신매매 개념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처벌조항의 부재로 인신매매 범죄는 수사도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⁹⁵ 이 법과 형법상 인신매매의 정의는 여전히 국제법 상 인신매매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모두 포섭하지 못한다. 이에, 정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가 식별되고 가해자가 형법상 인신매매로 처벌된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 또한, 현행법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인신매매 피해자가 적절히 식별되지 못하며, 필요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동착취 목적의 남성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대책 등은 전무하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외에도 어업, 농축산업, 조선업 등 노동조건이 열악하여 노동력이 부족한 현장에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및 사설 송출입양업체가 ‘이탈 방지’의 목적으로 여권 및 신분증을 압수하거나 고객의 송출입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관행이 만연하여 이들은 노동착취 및 강제노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팔레르모의정서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형법 상 인신매매 정의를 개정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상 가해자를 예외없이 처벌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라.
-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및 장애인 피해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지표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 정부는 이주노동자 입국 과정을 사설 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책임지도록 하고 여권, 신분증을 압수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15 비자발적 정신병원 입원에 따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비자발적 정신병원 입원절차 [국가보고서 123-126]

정부가 관련 법률⁹⁶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과적 구금제도는 입원대상자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나 정부의 결정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비자의입원제도⁹⁷가 법률상 여전히 존재한다. 새로 도입된 입원적합성심사제도는 대면심사를 보장하지 않고,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의 서류심사로 진행된다. 이 심사를 통한 퇴원율은 1.5%에 불과하다.

⁹⁵ 입법 전 법안에 대해 인신매매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현대판 노예제특별보고관이 정의 조항의 문제, 처벌조항의 부재, 피해자 보호의 한계 등에 대해 공동서신을 보냈으나, 특별보고관의 문제제기는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되었다. (Reference: OL KOR 2/2021, 15 March 2021).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Issues/Slavery/SR/JointOpenLetter_OL_KOR_15.03.21.pdf

⁹⁶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⁹⁷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제44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은 비자의적 입원에 해당한다.

정부가 제시한 통계에서 비자의입원 비율의 추이는 낮아지고, 자의입원의 추이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통계가 실제 비자의입원의 추이를 보여주는 것일 수 없다. 자의입원은 퇴원시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로 요구되는 ‘동의입원’ 유형⁹⁸을 포함한다. 즉, 동의입원은 실질적으로 비자의적인 입원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자의적인 입원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비자의입원 비율이 낮아졌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 가족의 의사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비자의적 입원을 허용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동의입원을 폐지하라.
- 비자의적 입원을 행정입원으로 일원화하여 강제적 조치를 최소화하고 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라.

16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교정시설 [국가보고서 127-133]

2020년 수용정원 대비 수용 비율은 112.1%(최대 130.5%)에 이른다. 그럼에도 현행 법에는 수용자 1인당 최소한 보장 받는 거실 면적을 정하지 않고 있어, 과밀수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⁹⁹ 징벌에 의한 독방구금 일수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징벌에 의한 독방구금을 최대 ‘45일’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연속적인 징벌로 최대 95일의 독방구금에 처해진 사람도 있다.¹⁰⁰ 보호장비의 경우도 사용시간을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보호장비의 사용을 교도관의 재량에만 맡기고 있다. 2023년 7월 국가인권위는 정신장애인 수용자에 대해 과도한

⁹⁸ 정신건강복지법 제 42조 동의입원은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될 당시 신설된 입원 유형이다. 당시 동의입원이 신설된 의도는 입원률이 매우 높은 당시 한국의 현실에 대응하여 자의입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중간쯤 되는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자의적 입원을 확대하고자 한 것에 있다. 그 결과 현재 법률상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은 자의적 입원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행정입원은 비자의적 입원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동의입원은 오히려 악용되어 빈번한 자유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21)를 통해 최종적으로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은 동의입원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이 제출한 사례; 정신의료기관이 동의입원 절차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례; 입원 당시에는 당사자가 자의입원을 신청하였으나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부당하게 동의입원으로 처리한 사례 등이 확인된 바 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동의입원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⁹⁹ 국가인권위는 2022년 5월 법무부장관에게 조속히 과밀수용 개선을 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2022. 4. 15.자 21진정0027900 결정.

¹⁰⁰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Public Announcement of Opinion on Fif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pursuant to the optional reporting procedure, due in 2020, 6 July 2020,

<https://www.humanrights.go.kr/site/inc/file/fileDownload?fileid=14732&filename=f3ae08fa8340c cbb776f039617f20b79.pdf>

보호장비를 사용한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착용을 최소화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¹⁰¹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수용자 1인당 거실 면적을 법에 명시하고, 과밀수용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라.
- 금지징벌의 최장 기간을 15일 이하로 법에 명시하고, 보호장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하라.

17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을 접견하고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 접견권 [국가보고서 134-137]

정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모든 수사과정에서 보장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 권리가 실제 충족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2017-2019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신문 참여율은 0.9%에 불과하다.¹⁰² 특히 피의자는 체포되더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했을 때에만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참여에 관하여 수사기관에게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¹⁰³ 또한, 대검찰청 규정은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제약하고 있다.¹⁰⁴ 제한된 국선변호인제도¹⁰⁵로 인해 취약한 사람들은 수사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정부는 특히 취약집단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수사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
- 정부는 변호인의 참여가 수사기관의 자의로 배제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최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보호 [국가보고서 138-142]

¹⁰¹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징벌부과 시 적절한 보호조치 강구해야](#)’

¹⁰² 이투데이, ‘3년간 변호사 경찰 신문 참여율 1% 미만… 수사관들이 꺼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93658>

¹⁰³ Article 243-2 (1) of Criminal Procedure Act

¹⁰⁴ Article 7, 8 of Operating Guidelines on Participation of Defense Attorney in Interrogation and Investigation

¹⁰⁵ Article 33 of Criminal Procedure Act

자유권위원회의 2015년 최종견해와 고문방지위원회의 2017년 최종견해는 자유누리센터¹⁰⁶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했다.¹⁰⁷ 2018년과 2019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사기간 상한이 3개월로 축소되었으나 보호에 관한 결정기간에 제한이 없어 여전히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¹⁰⁸ 여전히 국정원이 조사와 구금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¹⁰⁹하고, 변호인접견권은 보장되고 있지 않다. 보호결정조사와 형사수사의 관련당국과 절차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현행 관행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잠재적 간첩으로 간주하는 접근으로 고문 및 가혹행위에 준하는 인권 침해와 남용을 가능하게 한다. 국정원이 운영하는 구금시설에서 국정원이 위촉한 인권보호관 1명이 시설내 인권침해 여부를 파악하고 예방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¹¹⁰

- 정부는 자유누리센터에 구금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의 변호인접견권을 보장하고, 보호불허 또는 강제추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라.
-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완전 이관을 예정대로 시행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결정조사와 형사수사에서 국가정보원을 완전히 배제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정착과정에서 올바른 권리보장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라.

18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는?

외국인보호소 [국가보고서 143-148]

¹⁰⁶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대외명칭, (구)정부합동신문센터

¹⁰⁷ 1)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가능한 최소한 기간의 구금 보장, 2) 심문 시를 포함 구금된 전 기간 동안 변호인 접견권 보장, 3) 정착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결정하는 조사절차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수사절차 구별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¹⁰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은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보호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호신청을 한 날로 한다)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보호 결정 등)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¹⁰⁹ 2024년 1월 1일부터 대공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그 이후 국가정보원은 자유누리센터에 구금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¹¹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인권보호관) ①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보호시설에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위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보호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을 상대로 두 손과 발을 뒤로 결박하는 ‘새우껍기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CCTV를 통해 드러난 사건¹¹¹ 이후 정부는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적법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¹¹² 이후 고문을 합법화하는 보호장비 도입을 시도하는¹¹³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아동의 구금 금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부모가 강제되거나 대상이 되는 경우 영유아도 부모와 함께 구금될 수 있다. 국가보고서는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자)의 구금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나, 14세 이상 아동의 구금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는 사법부 등 독립된 주체에 의한 정기적 심사 및 구금 기간의 상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이주구금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법무부는 현재까지도 개선입법에 대한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아동의 구금을 계속하고 있다.¹¹⁴ 한편,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집중단속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건물에 침입하여 미등록체류자를 체포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등록체류 외국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¹¹⁵

국가보고서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후 공항에 머무르는 사례는 본인 의사에 따라 출국이 가능하니 구금된 것이 아니라 주장하나,¹¹⁶ 이들은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입국하지 못하고 공항에서 하루 두끼의 식사만 제공받으며 공항 출국대기실에 또는 출국 게이트에 방치된 채 노숙하며 지내야 하는 등 신체적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¹¹⁷

- 정부는 이주구금의 상한을 정하고, 아동의 이주구금을 절대 금지하며, 법원 등 독립된 기관에 의해 정기적 심사를 받도록 출입국관리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¹¹¹ The Observers, “Surveillance footage reveals shocking treatment of migrant in South Korean detention”, 6 October 2021,

<https://observers.france24.com/en/asia-pacific/20211006-moroccan-migrant-detained-south-korea>

¹¹² Yonhap News. “Justice Ministry acknowledges rights violation at detention center for illegal immigrants”, 1 November 2021, <https://en.yna.co.kr/view/AEN20211101007700315>

¹¹³ Hankyoreh, “Civic groups condemn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protective gear as “torture devices”, 22 June 2022,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48108.html

¹¹⁴ The Korea Herald, “Minor Party slams ministry for detaining Mongolian 3-year-old”, 14 June 2023,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30614000691>

¹¹⁵ Hankyoreh, “For Korea’s Justice Ministry, no place is sacred from immigration raids”, 5 May 2023,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90678.html

¹¹⁶ 한국 난민인권네트워크에 의하면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에서 난민신청자 측의 승소율은 75% 이상이며, 국가보고서에 언급된 ‘불회부결정을 받고 장기간 공항에 머무른 가족의 사례’의 당사자는 실제로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절차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¹¹⁷ The Korea Herald, “Hidden lives of terminal dwellers in South Korea”, 15 May 2023.,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30515000710>

- 정부는 국제기준 및 국내법에 부합하지 않는 출입국항에서의 ‘불회부 결정’의 남발을 중단하고, 불회부된 외국인이 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최소한 난민신청자에 준하는 범위의 처우를 보장하라.

19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국가보고서 152-159]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등이 재판을 청와대, 국회, 정부와의 협상 수단 등으로 활용하거나, 개별 법관을 사찰하고, 개별 사건 재판에 개입하여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난 지 5년의 시간이 흘렀다. 사법농단 사건은 명백히 국제인권규범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자, 개별사건 관계자들의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었다.¹¹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여법관들에 대한 형사 재판은 대부분 무죄판결이 내려지고 있고, 징계는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일부 법관에 대해 극히 미미한 처분만 내려졌다. 국회가 나서,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임성근을 탄핵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법관 임기 만료를 이유로 각하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사법행정권,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판사의 관료화, 서열화를 강화하는 인사구조 등 관료적 사법행정구조에 있다. 사법농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 관료화를 해소하는 제도적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2019년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켰지만 자문기구에 불과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분산과 견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기구인 (가칭)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대법원장에게 독점된 사법행정권을 분산시켜라.

20 국가안보를 위한 감시(사찰)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는?

통신 감시 [국가보고서 166-168]

¹¹⁸ 참여연대와 민변은 2018년 6월 7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을 제출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DaditlGH9vNE5lIJCjYBnGczGOp3Ff4/view> 이에 대해 특보는 2018년 11월 15일, 한국 정부에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onFile?gId=24183>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와 2017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¹¹⁹ 및 2021년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¹²⁰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 해 500만 건¹²¹ 이상의 통신자료(이용자 정보, 이는 수많은 개인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국민식별번호를 포함한다)가 법원의 통제없이 수사의 필요성만 있으면 정보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여전히 제공되고 있다. 2018년 인터넷회선 감청, 기지국 수사 및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¹²² 감청 통제 제도는 감청 일반이 아닌 인터넷회선 감청으로만 제한되었고, 감청 자료도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보관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정보기관의 일상적인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우려한 제12조는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감청 당사자가 감청 자료를 열람하고 감청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 정보수사기관의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접근에 사법적 통제장치를 도입하라.
-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통신감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

2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조치는?

대체복무제도 [국가보고서 169-174]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는 대체복무제 도입과정에서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¹²³고 말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현 대체복무제도는 군복무에 비해 명백하게 차별적¹²⁴이다. 병역거부자들은 36개월 동안 무조건 전원 합숙 복무를 하는데 이는 임금과 복무형태(합숙)가 같은 현역 육군 병사(18개월 복무)보다 두 배나 긴 기간이다. 또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관은 교정시설로만

¹¹⁹ Third-party Intervention Submission by David Kay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2017.5.9.

<https://drive.google.com/file/d/0BxXbShVCHSVaU29DWUMwNFZLYk/view?resourcekey=0-0E2Kv1TNDuG6kqddWQiUjQ>

¹²⁰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Joseph Cannataci, 2021.6.25. A/HRC/46/37/Add.6 (para 62)

¹²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22.12.23.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bbsSeqNo=94&nttSeqNo=3182568>

¹²²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국문) (2020.3.2.) <https://www.peoplepower21.org/publiclaw/1688300>,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규탄 성명 (국문) (2020.3.5.) <https://act.jinbo.net/wp/42316/>

¹²³ 국방일보 ‘교도소 등서 36개월 합숙 복무… 이달 말부터 편입 신청’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00604/2/BBSMSTR_00000010026/view.do

¹²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도 현 대체복무제도가 “징벌적 수단”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며 특히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군인 복무기간의 1.5배가 넘지 않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81119000726>

국한되어 있으며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¹²⁵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 병무청 소속이고, 심사위원 추천 또한 국방부와 병무청이 전체의 40%에 달하는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입장이 과잉 대표되고 독립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며¹²⁶ 다양한 경험과 인권감수성을 가진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다.¹²⁷

- 정부는 병역거부자들이 현역 군인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를 받는 상황, 특히 지나치게 긴 기간¹²⁸을 단축하라.
- 병역거부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복무영역을 넓히고, 복무기간과 복무형태를 다양화 하라.
- 정부는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
- 정부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완전하게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라.

22 명예훼손 비범죄화, 국가보안법 제7조 개정에 대한 입장은?

명예훼손 비범죄화 [국가보고서 185-186]

¹²⁵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8년 “이미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유엔 인권위원회, 1998년, 결의 77호, E/CN.4/RES/1998/77)고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권을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독일,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를 인정했거나(징병제가 중단된 나라의 경우) 인정하고 있다.

¹²⁶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했으나(<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7030830001>) 병무청장은 시기 상조라며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개선안을 사실상 거부했다(<https://www.news1.kr/articles/5098909>) 이는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병무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¹²⁷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병무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등 총 13명

¹²⁸ 대체복무제의 기간에 대해서는 2017년 유럽인권재판소가 아르메니아에 대해 (Adyan and others v. Armenia, no.75604/11, ECHR, <http://hudoc.echr.coe.int/eng?i=001-177429>),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오스트리아에 대해 (UN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Austria, 3 December 2015, CCPR/C/AUT/CO/5, paras 33-34, <http://undocs.org/CCPR/C/AUT/CO/5>) 군복무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¹²⁹¹³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 뿐만 아니라 기사 또는 논평, 제품 품평마저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가치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보호되는 명예는 허명, 위선이며 오히려 비판이나 폭로의 대상이 되는 권력자, 가해자 등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악용하여 사적 보복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민주적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사실에 근거한 사회적 신뢰 형성을 방해한다.¹³¹ 실제로 대통령실,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등이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다.¹³² 또한 한국정부는 무분별한 고소 방지 위해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없이 각하하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경찰, 검사의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측가능성이 없고,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 역시 피해자가 스스로 공익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 정부는 제4차 자유권위원회의 최종 권고와 같이 “진실을 옹호하는데 더 이상의 요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제7조 [국가보고서 177-178]

한국에서 지난 7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는 연평균 26명에 달하며¹³³ 2023년 8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0명이 구속되어 있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¹³⁴ 국가보안법에 대한 아홉 번째 위헌심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사상 최초로 공개변론을 개최하였다.¹³⁵ 정부를 대표해 참여한 법무부는 “자유권 규약은 헌법 6조상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으로 보기도 어렵고 자유권 규약은 존중하고 숙고해야 할 대상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음란물, 아동성착취물도 소지 그 자체로 처벌한다. 오늘날 기술 발전과 SNS 환경 등을 종합하면 이적표현물을

¹²⁹ 2011년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2017년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를 통해 한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했다.

¹³⁰ 21대 국회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 또는 비범죄화 하는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11649, 2021년 7월 22일 발의),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12050, 2021년 8월 13일),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09360, 2021년 3월 4일),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19118, 2022년 12월 26일) 등

¹³¹ 한겨레21, ‘사실을 말한 죄’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범죄자 된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789.html

¹³² 미디어오늘, ‘대통령실 ‘천공의혹’ 기자 고발 위축 효과 노렸다 볼 수밖에 없는 이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308385>, 오마이뉴스, ‘윤석열 정부의 입막음용 고소 고발 실태’ <https://omn.kr/2309u>

¹³³ e-나라지표, 범죄유형별 공안사건 처리현황 -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45

¹³⁴ JIBS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확대 2023. 6. 14. [JIBS | 뉴스 다시 보기](#)

¹³⁵ 2022년 9월, 국가보안법 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와 7조 찬양·고무 등의 조항에 대한

소지하는 위험성은 결코 마약류나 불법무기 소지보다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¹³⁶ 국제사회는 수차례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7조 개정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¹³⁷

- 정부와 국회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라.
- 국가보안법 7조는 즉각 삭제하라.

23 공무원, 교사 등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는?

노동조합 [국가보고서 179-183]

정부는 2021년 4월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했다.¹³⁸ 앞서 국회는 2020년 12월 관련 3개 법을 일부개정 했으나¹³⁹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대부분 남아 있다. 특히 다수의 비전형 고용관계 하의 노동자를 배제하는 협소한 ‘근로자’¹⁴⁰ · ‘사용자’¹⁴¹ 정의,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¹³⁶ 오마이뉴스, ‘국보법 첫 공개변론에서 ‘아동성착취물론’ 내놓은 법무부’ <https://omn.kr/20q60>

¹³⁷ 2008년, 2012년, 2017년, 2023년 총 4차례 열린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에서는 국가보안법 전반에 대한 우려와 폐지 또는 개정의 권고를 받았고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2년, 1999년, 2006년, 2015년 등 4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하였다. 고문방지위원회는 1996년, 2006년, 2017년 등 3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유엔 표현의 자유 증진과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등도 국가보안법 7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하였다.

¹³⁸ 2023년 8월 현재 자유권규약 22조에 대한 유보는 유지하고 있다.

¹³⁹ 2020년 12월 9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무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원노조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1년 1월 5일, 공포를 거쳐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각각 법률 제 17864호, 제 17860호, 제 17861호. 해당 개정을 통해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하였고 (노동조합법 2조 4항 라목 단서조항 삭제, 공무원노조법 6조 개정, 교원노조법 4조 의 2 개정), 공무원노조법 6조 (가입범위)를 개정하여 공무원의 직급제한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하고, 직무 특성에 따른 가입 제한 조문을 정비했다.

¹⁴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민국이 한 EU FTA 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상의 국제노동기준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문제제기해서 설치된 전문가 패널은 노동조합법 2조 1호 ‘근로자’정의와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지표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가 종속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종속 계약자’를 비롯한 많은 부류의 자영업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를 할당 받으며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플랫폼 노동자를 배제하며, 이는 자유직업인(변호사, 의사, 건축가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아무런 차별없이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https://circabc.europa.eu/ui/group/09242a36-a438-40fd-a7af-fe32e36cbd0e/library/d4276b0f-4ba5-4aac-b86a-d8f65157c38e/details>

¹⁴¹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민주노총 등이 진정한 사건 2602호, 3047호 등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부인함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제기에 대해 정부가 이 사건에서 제기된 결사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장애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음.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 보고서 363호(2012년 3월), 456~457항 및 467항, 보고서 381호 (2017년 3월) 359항.

설립신고제¹⁴², 교원·공무원의 단체교섭권 제한 및 단체행동 금지¹⁴³, 쟁의행위에 대한 폭넓은 민·형사상 제재를 가능케하는 협소한 쟁의행위 범위¹⁴⁴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극히 일부의 개선을 위한 개정 법안¹⁴⁵이 국회에 계류중이나, 대통령은 국회 통과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 정부는 22조 유보를 철회하고 노동관계법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개정하라.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정부 주도의 노조 탄압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후,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노조 혐오 선동, 노조 운영에 대한 행정적 개입과 노조 활동에 대한 사법적 탄압으로 결사의 자유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었다. 2022년 말부터 대통령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공식 발언을 통해 노조를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한 축’¹⁴⁶이라며 법적

¹⁴²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 결격사유를 제시하고 있고 제10조(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해 노조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과정에서 행정관청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¹⁴³ 국가공무원법 제 66조(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교원노조법 제1조(목적), 공무원노조법 제 4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국가공무원법시행령 제27조(정치적 행위), 국가공무원법 제 66조(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원노조법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교원노조법 제 8조(쟁의행위의 금지) 공무원노조법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및 체결권한 등),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비교섭사항)

¹⁴⁴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원칙적으로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합법파업이 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제약적이어서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쟁의행위의 목적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단체교섭사항에 관한 파업만을 정당한 파업으로 보아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의하는 파업이나 입법에 관한 요구를 제기하는 파업, 이른바 경영권 사항이라고 간주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대한 파업,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사용자에 대한 요구를 내걸고 하는 파업은 불법으로 본다. 공공부문에서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합법 파업이 아니면 평화적인 파업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적용)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가능하다.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대한민국 보고서 (A/HRC/32/36/Add.2) 70~73항,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 보고서 382호(2017년 6월) 82항, 87항, 89항, 90항, 93항, 95항.

¹⁴⁵ 민주노총 등 130여 개 노동, 법률, 시민, 인권단체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022년 11월 노동조합법 2조의 ‘근로자’(1호), ‘사용자’(2호), ‘쟁의행위(5호)’의 협소한 정의를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와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결사의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3조를 파업권이 손해배상의 위협아래서 무력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민법이 아니라 헌법과 노동법의 관점에서 손해배상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쟁의 행위의 원인(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방어하기 위한 쟁의행위), 손해배상청구의 목적(노조 파괴 및 조합원 괴롭힘 목적의 소권 남용 제한), 파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따지도록 개정하는 안을 입법청원제도를 통해 발의했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내용이 누락된 형태로 조정되어 2023년 8월 10일 현재 계류중이다.

¹⁴⁶ 2022년 말부터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공식 발언을 통해 노조를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한 축,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노동조합 회계관리 부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2022년 1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동조합 개혁의 출발점”(2023년 2월 17일).

근거 없는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¹⁴⁷했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배제했다.¹⁴⁸ 정부가 창조한 ‘노사법치’¹⁴⁹를 내세워 화물연대 파업을 탄압했고¹⁵⁰ 노조 규약 및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¹⁵¹ 이러한 분위기는 현장단위기의 노사관계에도 즉각 반영되어 노조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다.¹⁵²

-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탄압을 중단하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 및 낙인찍기

¹⁴⁷ 고용노동부는 2022년 12월 29일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 및 연합단체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율점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후 2023년 2월 1일 자율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를 노동조합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개입이자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로 보고 요구에 전적으로 따르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특히 가장 대표적인 두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있다.

¹⁴⁸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건강보험 재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자격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보장제도 등의 운영을 위한 각종 기구에서 양 노총을 배제하고 있다.

¹⁴⁹ ‘정부는 “누구도 법 이외의 것에 의해서는 지배당하지 않는다, 누구도 법에 의하지 않으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법치를 노사관계와 연결하면서 “노사 모두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준법’으로 탈바꿈 시켰다. ‘노사법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여 노사관계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대화의 영역이 아닌 사법적 통제와 처벌의 영역이라는 관념과 노동조합은 주로 법을 위반하는 집단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확산하고 있다.

¹⁵⁰ 정부는 2022년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임의로 불법파업이라고 선언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파업을 무력화했다.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삭감된 임금을 복원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이를 불법파업으로 몰았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기간 중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이라며 노조 지도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약 3560만 달러, 3230만 유로)의 손해소송을 제기했다.

¹⁵¹ 이는 특히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교사·공무원 노조에 집중되고 있다.

¹⁵² 2023년 5월 4일, 현대자동차와 BMW에 부품을 납품하는 일진하이슬루스에서 관리자가 자신의 차를 몰고 노조 간부들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하고 노조 부지회장에게 중상을 입혔다.

정부는 2022년부터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조직 범죄’로 규정하여 탄압작전을 벌였다.¹⁵³ 2023년 8월 1일 현재까지 경찰은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각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활동을 강요, 공갈, 협박, 업무방해 등 범죄로 보고 조합원 1,550여 명을 소환조사하여 33명을 구속하고 (6명 석방), 20건의 노조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가 속한 기계분과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¹⁵⁴

- 정부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 모든 기소를 철회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단체교섭 메커니즘을 개발하라.

24 정당해산,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수용자의 선거권 제한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은?

교원노조 [국가보고서 185]

¹⁵³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12월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고, 2023년 6월 25일 특별단속을 통해 1,484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한 후 기간을 50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30%에 해당하는 551명은 폭력단체, 사이버 언론단체 등이었으나 나머지 70%는 노동조합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노동조합을 폭력집단으로 묘사한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여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건설 현장은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불안정한 고용을 특징으로 한다. 이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은 직접 건설업체에 노동자를 공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 투명한 고용관계와 적절한 노동조건을 유지한다. 정부와 경찰은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각 건설현장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강요죄,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사용자를 상대로 집회 등을 개최하여 압박하는 것이 협박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선 특정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고 이동이 잦아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타임오프(노조전임 활동을 위한 유급 근로시간면제)를 배정받기 어려워 단체교섭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해 전임활동에 대한 급여를 보장받는다. 경찰은 이를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00년대 초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유사한 형태의 수사에 대해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해 노조 지도자 또는 조합원을 구금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 노동조합 권리에 심각한 간섭이다. 노조 활동의 정상적인 발전에 해가 되는 협박과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특히 불안정하고 취약한 근로자의 경우 위협의 효과가 더 강력할 수 있다.”며 “정부가 취약한 일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 부문의 고용조건에 대해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 340차 보고서, 2006년)

¹⁵⁴ 정부는 전국건설노동조합 기계분과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들이 가입한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사업자 단체고 따라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다고 본다. 또 이들의 노조활동은 공정거래법 제 40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제 45조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기계지부 9개 현장 고용 요구 활동에 대해 30여 억의 과징금 부과, 2억6천9백만원 과징금 확정했고, 제주, 대전세종, 경남 기계지부 등 4개 현장 고용 요구,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해 2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무원 및 교사는 일반 시민과 달리 정당법,¹⁵⁵ 공직선거법¹⁵⁶, 국가공무원법,¹⁵⁷ 지방공무원법¹⁵⁸에 따라 정치적 의사표현 및 정당가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및 교사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에 대해서 포괄적인 범위에 걸쳐 선거운동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¹⁵⁹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및 협동조합 직원의 정치중립의무는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불편부당을 위한 것이지만,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정치적 의사표현이 과도하게 제약되고 있다.

2019년 2월 ILO 전문가위원회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조항은 ILO협약 111호(차별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개선을 권고했고,¹⁶⁰ 2020년 10월에는 대한민국 국민 10만 명의

¹⁵⁵ 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¹⁵⁶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¹⁵⁷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¹⁵⁸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¹⁵⁹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選舉權이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¹⁶⁰ ILO전문가위원회는 한국정부의 111호 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우선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서는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정치적 의견에 기초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동의서명으로 개정 입법청원이 있었으며,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도 상정되어 있지만 아직도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정부는 고위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전면 보장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

수용자 및 피치료감호자 선거권 [국가보고서 186-189]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2호에 대해 정부는 필요한 경우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법무부의 교정통계연보¹⁶¹에 따르면 전체 수용자 34,475명 중 86.7%가 1년 이상의 수용자로 대다수의 수용자가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피치료감호자의 선거권을 정지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호¹⁶² 역시 2015년 이후 어떠한 개정 논의도 없었다.

- 정부는 수형자와 피치료감호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모든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다하라.

25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집회의 자유 [국가보고서 190-197]

2022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와 제한이 급증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 위치로 이전이 결정된 직후(2022.4)부터 대통령실 앞 100m 이내의 집회와 행진을 모두 금지¹⁶³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시 집회 금지 현황을 보면 용산경찰서가 4.41% (3,919건 신고 중 173건 금지)로 남대문경찰서 1.86%, 종로경찰서 1.69%, 서대문서 1.60%, 영등포경찰서

취할 것”. “특히 교실 밖에서 혹은 가르치는 일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은 보장하고 이런 이유로 교사들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서는 “정치활동 금지를 특정 직책에 국한할 것을 검토할 것, ”정치적 의견이(의 금지가) 본질적 요건인 공공부문 내 특정 직무 리스트 채택 가능성을 검토할 것“. 2021 ILO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ddendum to the 2020 Report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CEACR)), 493 페이지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771042.pdf

¹⁶¹ 법무부, 2023 교정통계연보

¹⁶²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공무원이 될 자격, 2)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¹⁶³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반복된 결정에도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해 금지하고 있다.

0.46%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로 금지했다.¹⁶⁴ 대통령실 인근 집회는 ‘신고→경찰의 금지 통고→경찰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법원의 인용 결정’이란 절차를 거친 뒤에야 열리고 있다. 법원은 매번 집행정지 결정을 했고 심지어 본안 사건에서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했지만 경찰은 지속적으로 금지통고와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해 집회를 방해하고 시민을 괴롭히는 행위다. 최근에는 집시법 제12조의 주요도로에 이태원로를 포함시키도록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했고¹⁶⁵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사유를 추가했다.

대통령이 2023년 5월 건설노조의 고 양회동 열사 추모 1박 2일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¹⁶⁶하자, 여당은 심야부터 아침까지 집회를 금지¹⁶⁷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경찰은 2022년부터 매달 진행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야간 문화제를 진압하고 연행 했다. 경찰의 강제 해산으로 참가자들이 부상 당했으며 이후 40여 명이 경찰조사에 소환되었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심야 집회, 주요도로 집회로 피해가 크다며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법령 개정을 요구했지만, 집회 규제가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시 이후로 경찰은 교통 방해 등을 이유로 출·퇴근 시간대의 집회를 금지해 오전 10시~ 오후 5시 동안만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¹⁶⁸ 특히 노동자, 장애인의 집회가 주요 표적이 되어 강도높게 탄압받고 있는데, 2023년 5월 포스코 하청 노동자 고공농성 이틀 만에 농성자가 경찰 곤봉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며 끌려내려와 구속됐다.¹⁶⁹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권옹호자들에게도 물리력을 행사하고, 소환장을 보내 수사하고 있다. 이는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지방 정부 역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랜기간 시민들의 집회 공간으로 이용되었던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2015년부터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서울퀴어퍼레이드도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2023년에는 사용을 불허했다.¹⁷⁰ 대구시는 대구퀴어퍼레이드 조직위원회와 대구경찰청장 등을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정부는 자유권규약 제21조, 일반논평 37호에 따라 평화적 집회의 권리 보장하라.
- 정부와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과 주요도로에서 집회금지를 중단하고,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¹⁶⁴ 2018년, 2019년 서울시 전체 집회금지율은 평균 0.002~0.003%

¹⁶⁵ 경향신문,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 2023. 5.21.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5210830011>

¹⁶⁶ Hankyoreh, As Korea’s ruling party and government move to restrict public assemblies, police train to break up protests, May.25, 2023, https://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93345.html

¹⁶⁷ 야간집회 금지 조항은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 효력을 상실했다.

¹⁶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심야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집회를 금지한 사례는 없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사생활 평온을 이유로 금지한 경우는 단 2건이다.

¹⁶⁹ Hankyoreh, [Video] Korean police bludgeon protesting unionist over head, sending him to hospital, Jun.1,2023, https://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94281.html

¹⁷⁰ 동아일보, 서울시, 서울광장에 퀴어축제 불허...청소년 행사가 우선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504/119144189/2>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와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을 명시한 집시법 12조를 삭제하라.

- 정부와 경찰은 출퇴근 시간과 야간 시간 집회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반인권적 시도를 중단하라.

26 이주민,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 근절,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는?

차별과 혐오표현 [국가보고서 200-201]

대한민국의 어떤 법에도 인종차별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형법상 이미 규정된 범죄에 이르지 않는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이나 차별행위는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¹⁷¹ 2018년 약 500여명의 예멘인들이 난민신청을 한 이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주민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적 발언과 정책이 발표되었으나 정치인 등 공직자들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특히 윤석열 현 대통령의 경우 대선 당시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였다.¹⁷²¹⁷³ 2020년 대구시의 인종차별적 무슬림 사원 공사 중지 명령 후 주민들이 공사현장에 돼지사체를 두고, 돼지 바베큐 파티를 하는 등 혐오표현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인종차별 법제는 전무하며, 정부당국도 이러한 국면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¹⁷⁴

- 정부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 혐오선동 활동 또는 혐오선동세력을 제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정책이나 법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하라.

난민 [국가보고서 198-199, 202-208]

¹⁷¹ 정부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송통신법 제6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인종적 묘사와 관련해 차별적인 보도를 하면 안된다'는 선언적인 규정일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¹⁷² The Korea Times, Lee-Yoon clash over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foreign residents, Feb.2, 2022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3/07/113_323186.html

¹⁷³ 코로나 19 발생 초기 재한 중국인들에 대한 공적 마스크 구매에서 이주민 대부분이 배제되고,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이주민들이 정부 혹은 지자체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수 지자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별적으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명하는 행정명령을 발부하는 등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문제되었다.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11025000321>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0/11/177_300037.html

¹⁷⁴ 대한민국 대구에 건립될 이슬람 사원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 무슬림 학생, 대구시 북구청 간의 심각한 갈등이 지난 2년간 지속되고 있다. 이후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명된 북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으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결국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최근에는 주민들이 공사장 바로 앞에 돼지고기를 구워먹고 돼지머리와 잘린 돼지다리를 전시하는 등 공사를 방해했지만, 정부는 '돼지머리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개입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종교적 혐오를 용인하고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21111000214>
<https://www.nytimes.com/2022/03/01/world/asia/south-korea-diversity-muslims.html>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매년 0-2%에 불과하다.¹⁷⁵ 정부는 난민인정(보호) 통계에 인도적체류자를 포함하나, 한국의 인도적체류자¹⁷⁶는 난민신청자와 다를 바 없는 임시적 체류자격이고 사회적 권리에서 대부분 배제되어 있다.

정부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지원이 있다고 하지만, 생계비를 받는 난민신청자들은 매년 약 2%도 되지 않고,¹⁷⁷ 지급기간은 3-4개월에 불과하다. 주거지원 용도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했지만 실제 난민신청자는 2%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소한 난민신청자의 외출을 통제하는 등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¹⁷⁸ 난민법상의 난민신청자 처우지원제도는 규정만 있을 뿐 난민신청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심사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난민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통번역 지원 및 조력이 전무하다. 난민법상 난민심사관은 전국적으로 4명에 불과하고, 사실상 심사인력으로 활용하는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나 관리감독은 입법의 공백이며,¹⁷⁹ 통역인 풀은 부실하게 운영되었다.¹⁸⁰ 정부는 현행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정부의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 난민신청자에 대해 면접조사를 생략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난민인정심사 부적격제도’로, 유엔난민기구,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등 관계부처와 시민사회,

¹⁷⁵ 2019년 0.4%, 2020년 0.4%, 2021년 1%, 2022년 2.03%. 2022년의 경우 한 해 동안 총 11,539건의 난민신청이 있었으나, 단 175명 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는 기존난민인정자의 가족결합자와 유엔난민기구가 인정한 난민을 초대하는 재정착 난민을 모두 포함한 수이며,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심사를 통한 난민인정자는 단 22명에 불과하다. 난민인권센터,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22.12.31기준)” (2023. 4. 10.), <https://nancen.org/2344> 영문자료: NANCEN Refugee Rights Center, Refugee Statistics in South Korea (2022.12.31.), <https://nancen.org/2043>

¹⁷⁶ 인도적체류자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 보충적으로 부여되는 지위이다. 2022년 기준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 받은 사람은 총 67명이다. <https://nancen.org/2043>

¹⁷⁷ 난민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는 난민인정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의 생계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지급하는 생계비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난민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6개월 까지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 12. 31. 기준 법무부가 제공한 통계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11,539건의 난민신청자 중 단 177명만이 생계비를 받았고 평균 지급기간은 4.1개월에 불과하다.

¹⁷⁸ 난민인권센터, “[통계] 난민 처우 현황 (2022.12.31기준)” <https://nancen.org/2346>

¹⁷⁹ 난민인권센터, “[통계] 난민 심사 현황 (2022.12.31기준)” <https://nancen.org/2345> 영문자료: Rights Exposure & NANCEN, Shouldering Responsibility: Reviewing South Korea’s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seven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2020. 7. 1.), <https://nancen.org/2069>

¹⁸⁰ 난민심사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조직적으로 부실심사를 지시 (2014년 11월~2017년 4월)하고, 이 기간 동안의 난민심사에서 난민신청자가 하지 않은 진술을 난민면접조서에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난민심사 조작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건은 2018년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피해가 드러났고, 2019년 정부차원의 감찰과 징계가 진행되었으며,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를 확인하였고, 2021년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22348.html

변호사협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¹⁸¹

- 정부는 충실하고 전문적인 난민심사제도 운영으로 난민인정률을 높이고, 장기간 난민심사 대기 중인 난민신청자의 생계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라.
-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난민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심사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인적·물적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라.

27 보편적 출생등록제 및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노력은?

보편적 출생등록제 및 출생통보제 [국가보고서 209-210]

2023년 6월, 감사원은 2015년에서 2022년까지 병원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6,000여 명 존재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 중 2,236명의 내국인 아동에 대한 집중조사를 진행하였고,¹⁸²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병원 출생의 4,000여 명이 주아동이 정부조사에서도 제외되었듯, 주아동에게는 출생통보제를 비롯한 한국의 출생등록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난민, 인도적 체류, 미등록 체류 중인 아동은 부모가 본국에 가거나 출신국 재외공관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한 어디에도 출생을 등록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의료기관에서의 출생을 국가가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데, 정부는 현재까지도 제도 도입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원 조사 결과 출생미등록 아동의 유기, 사망 사건이 다수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임신출산 지원 및 아동보호 대책은 전무하다. 오히려 정부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면 여성이 아동을 유기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편견에 기반하여, 부모의 동의 없이는 부모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익명출산제의 도입을 성급히 추진하고 있어¹⁸³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 부모를 알고 원가정을 보존받을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정부는 당사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 국적,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차별없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를 도입하라.
- 정부는 익명출산제 논의를 중단하고,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와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하라.

¹⁸¹ UNHCR's Comments on the Legislative Amendment Proposal to the Refuge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2021. 2. 17.), <https://www.refworld.org/pdfid/602cf8954.pdf>

¹⁸² Yonhap News Agency, "State audit shows over 2,000 babies unregistered in S. Korea after birth since 2015", 22 June 2023, <https://en.yna.co.kr/view/AEN20230622005300315>

¹⁸³ The Korea Herald, "Bill pushed to let women give birth anonymously", 28 June 2023,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30628000731>

28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자유권 침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자유권 침해의 우려에 대해 개선의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기술한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가 법률적으로 특정되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를 활용하여, 접촉자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않은 집단에 대한 강제검사¹⁸⁴ 및 강제격리 행정조치와 처벌을 남발하였다.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 개정 권고를 정부는 불수용 하였다.¹⁸⁵ 인권활동가그룹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2021년 6월까지 선고가 이루어진 방역수칙 위반 사례 566건 중, 591명이 벌금형(439건, 30만원~1,500만원)과 징역형(126건, 2개월~2년)을 받았다.¹⁸⁶ 또한 많은 지방정부에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는 법률에 명시되는 않은 방식으로, 다수의 개인들의 인신을 구속하고 이동의 자유를 장기간 제한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금지 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의 주문을 불수용 하였다.¹⁸⁷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감염 확산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보다 높은 수준으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지방정부는 구체적 방역조치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기한의 제한 없이 집회가 열리는 주요 장소를 집회금지장소로 지정했다.¹⁸⁸ 또한,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통해 감염이 발생한 특정 지역에 있었던 모든 시민들을 감염병 의심자로 간주하여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였고, 격리위반자를 대상으로 전자팔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으며, 모든 사람의 시설(식당, 백화점 등) 출입기록의 작성을 의무화하였다.¹⁸⁹

- 불특정 다수를 포함할 수 있는 ‘감염병 의심자’ 정의를 법률에서 삭제하고, 이에 따른 과도한 처벌과 범죄화, 정보인권 침해 시도를 중단하라.
- 감염병 환자와 접촉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금지할 규정을 법률에 포함하라.
- 감염병 대유행 시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¹⁸⁴ Neha Banka. Indians in South Korea say Seoul’s Covid-19 testing order on foreigners lacks clarity. The Indian Express. 2021.03.21.

<https://indianexpress.com/article/world/indians-in-south-korea-say-seouls-covid-19-testing-order-on-foreigners-lacks-clarity-7238537/>

¹⁸⁵ 국가인권위원회. ‘감염병예방법’ 개정 권고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이행계획 회신내용 공표. 2023.04.12.

¹⁸⁶ 랑희, 박한희, 서채완, 이주희, 정제형, 조은호, 황호준. 2021. 코로나19와 범죄화: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코로나19와 인권 연구모임.

¹⁸⁷ 국가인권위원회. ‘감염병예방법’ 개정 권고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이행계획 회신내용 공표. 2023.04.12.

¹⁸⁸ 공권력감시대응팀, 이슈보고서 :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2021 참조.

¹⁸⁹ Byoung-il Oh, Yeokyung Chang and SeonHwa Jeong, COVID-19 and the Right to Privacy: An analysis of South Korean experiences, <https://www.apc.org/en/pubs/covid-19-and-right-privacy-analysis-south-korean-experiences>

29 기후위기와 인권

한국에서는 매년 폭염, 호우와 같은 기후 재난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한다. 특히 일반시민 뿐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권이 중대하게 위협받음에 따라 2020년 12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기후 위기로 발생한 생명권, 건강권, 직업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도 제기되었다.¹⁹⁰ 2023년 6월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날씨에서 대형 식료품 주차장을 관리하던 29세 노동자가 사망했다.¹⁹¹ 그러나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 노동이 발생하는 수많은 사각지대를 충분히 규율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오송 지하차도에서만 14명이 사망하였고, 전국적으로는 최소 49명이 사망하였다. 환경부는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된다면 21세기 후반(2071년~2100년)에는 연 강수량이 현재보다 41.3% 나 증가할 수 있음을 전망하고 있는데,¹⁹² 앞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그러나 정부가 23년 4월에 의결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산업부문의 감축률을 지난 NDC('21) 대비 14.5%에서 11.4%로 하향되었다. 이로 인해 산업계는 810만톤에 이르는 탄소 다배출을 허용받았다. 정부는 부족한 감축분은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불확실한 감축수단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대 등을 통해 채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탄소감축에 있어 시장과 기술을 중심에 놓고 수치적으로 접근하는 정부의 계획으로는 심화되는 기후위기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 정부는 폭염, 호우와 같은 기후재난에서 개인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전면 재구성하라.
- 정부는 누적배출량과 탄소예산을 고려한 향후 20년 연도별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현 정부 임기 내 과감한 감축을 시행하라.

¹⁹⁰ 농축산 관련 업무 종사자 21명, 어업 종사자 2명, 노동자 5명(가스검침원, 배달노동자, 방송노동자, 건설노동자), 해수면 상승지역의 거주민 및 일반 소비자 2명, 기후우울증 등 건강상 피해자 7명, 청소년 4명으로 구성된 시민 41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기후위기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바도 있음. 이때 생명권, 건강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주거의 자유, 식량권 등의 침해를 주장함.

<https://www.greenkorea.org/activity/weather-change/climatechangeaction-climate-change/86044/>

¹⁹¹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직접 사인은 폐색전증, 원인은 '과도한 탈수'라고 기록됐으며 근무기록표에 따르면 숨진 노동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6월18일에도 휴식시간 없이 2시간45분, 3시간30분씩 연속으로 일했다. ([Costco worker dies due to excessive heat \(koreaherald.com\)](#))

¹⁹² 2020년 9월 발표한 '기후변화로 인한 장래의 강수량 및 홍수량 증가 정도' 참고

30 10. 29 이태원참사로 인한 생명권 및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의 침해

2022. 10. 29. 할로윈데이를 맞아 이태원을 찾은 시민들이 군중 압착되어 159명¹⁹³이 사망하고, 수백명¹⁹⁴이 부상을 입은 참사가 발생했다. 다중인파의 대규모 밀집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참사를 대비하여 예방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위험을 감지한 시민들의 수 차례 신고에 응답하지 않았다. 참사 이후, 정부는 고위 공무원을 배제한 현장 실무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형식적으로 진행했을 뿐,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다. 또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진실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폭넓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해 설명하거나, 피해자들의 회복 및 온전한 추모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생명권 침해 상황에 대한 필수적인 독립적인 조사, 책임자들에 대한 엄격한 문책 등 피해자의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회복과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추모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 국회는 10. 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정부는 이에 따라 독립적 조사 기구를 설치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라.

31 집회의 자유 탄압 및 장애인 이동권

한국에서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이동약자는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휠체어가 접근 가능 버스의 비율은 전국 평균 30.7%에 불과하고, 도시 간 이동버스 중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버스는 전국에 단 2대 뿐이다.¹⁹⁵ 지하철의 경우, 환승시설 미비(휠체어리프트)로 인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장애인 이동권을 비롯한 권리 보장을 위한 집회를 이어가던 활동가와 시민단체는 현 정부로부터 전례없는 탄압을 받고 있다. 과도한 무력사용을 통한 폭력적인 집회 진압,¹⁹⁶ 집회 참여 활동가들에 대한

¹⁹³ 참사 45일 후, 세상을 떠난 희생자 1인을 포함한 수

¹⁹⁴ 참사 후, 현재까지 혼수상태인 부상자 1인 포함

¹⁹⁵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2021

¹⁹⁶ 2023년 1월 2일 전장연 활동가 250여 명이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권리에선 반영을 촉구하며 벌인 지하철 탑승 선전전(집회)를 경찰 기동대 600여 명(10개 부대)이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이로 인해 집회 참여자들의 휠체어 파손, 출입 엘리베이터 중지 등이 이루어졌다.

무분별한 체포와 기소,¹⁹⁷ 정치인들의 시위 비하 발언 등이 전례없이 이루어졌다.¹⁹⁸ 이에 대하여 지난 4월 유엔특별보고관들은¹⁹⁹ 한국정부에 대하여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인권활동가에 대한 체포 등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²⁰⁰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환경을 마련하라. 모든 버스를 휠체어 접근 가능 버스로 교체하라.
- 한국 정부는 시민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체포와 기소, 과도한 집회 진압을 멈추어 자유롭게 평화로운 인권활동을 보장하라.

32 인터넷검열

한국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상의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를 심의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차단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통신심의’ 제도가 있다.²⁰¹ 인터넷 정보에 대한 행정검열로 기능하고 있는 본 제도로 연간 약 20만건이 넘는 정보가 차단되고 있다²⁰². 불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정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이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¹⁹⁷ 경향신문, 2023. 7. 18. “무분별한 체포와 기소: 전장연 오늘도 체포할까... 거둬진 헌법체포에 과잉대응 비판도”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7181548001>

¹⁹⁸ 한국일보, 2023. 3. 31. “2호선 시위' 첫날...이준석 "비문명적" VS 전장연 "굉장히 정파적"”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3111030001913>

¹⁹⁹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옹호자, 의사표현의 자유, 장애인 권리, 노인의 모든 인권향유 보고관

²⁰⁰ 보고관들은 2023년 4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해 (정부의) 자의적인 권리의 제한이 있었음이 제기됐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시위자이자 인권옹호자인 박경석 대표에 대한 체포 및 구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에이블뉴스, 2023. 6. 29. “유엔, “한국 정부 장애인 지하철 타기 행동 과도한 탄압 우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04>

²⁰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²⁰²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http://transparency.or.kr/>

필요한 정보와, ‘사회질서 위반’과 같은 ‘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사상 건전성 검열이나 정치적 여론 통제의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높다.

-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낸 권고대로 방심위의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 자율 심의 기구로 이양할 계획을 제시하라.
-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권한을 불법성이 중대·명백하고 긴급성이 있는 정보로 한정·축소할 계획을 제시하라.

33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 역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22년 11월 10일, 대통령실은 MBC의 “최근 외교 관계 문제들에 대한 왜곡 및 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해외 순방 취재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단의 탑승을 불허했다.²⁰³ 정부부처 장관들의 명예훼손 고소 역시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²⁰⁴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자녀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일간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변호사 시절 청탁사건 연루 논란을 다룬 일간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두 장관의 고소 남발은 국가기관을 이끄는 부처의 장관들이 공직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제도를 남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언론장악 공작을 주도한 이동관을 야당의 부적격 청문보고서와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도 무시한 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일련의 문건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기자와 피디들을 ‘좌편향’으로 몰아 숙청하고, 문제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방송장악 공작을 벌인 실태가 담겨있다. 이동관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결정으로 언론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깊이 우려하고 있다.

- 정부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 공직자에 대한 의혹제기 기사를 작성한 기자나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고발 중단하라.

34 시민사회 탄압

현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이후, ‘시민단체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언론을 통해 유포하는 등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국가 보조금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을 일방적으로

²⁰³ AP NewS, S Korea leader criticized for banning broadcaster from plane, <https://apnews.com/article/biden-travel-asia-indonesia-648b818c3e76e36c676b74479f798c73>

²⁰⁴ Kyunghyang Shinmun, Media “targets” of lawsuits, accusations, and investigations,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052045005>

폐지했고, 정부-시민사회 소통협력 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를 해체했다(2022.10.7.). 나아가 시민사회 활성화의 시민참여 기반이 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비영리공익활동, 민주시민교육 등과 관련된 제도(조례)와 기구(중간지원조직), 관련 정책 및 예산이 폐기되거나 대폭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참여와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또, 일부 극소수 민간단체들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문제²⁰⁵를 이유로 들어 시민사회단체 전부를 ‘이권카르텔’로 규정²⁰⁶하고 민간단체 전체대상의 보조금 대폭 삭감 및 지원대상 제외, 과도한 규제²⁰⁷ 등과 같은 억압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문제가 된 극소수 일부단체에 대한 문제해결이나 개선 차원이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언론 등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려고 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은 2023년 8월 15일 연설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고 발언하는 등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민사회와 인권옹호자들을 공격하며 인권옹호자의 안전과 시민사회 공간을 위협하고 있다.²⁰⁸

- 정부는 시민사회를 겨냥한 적대적인 조치와 발언 등 탄압을 중단하라.
- 정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관련 제도를 마련하라.
-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제도와 기구를 설립하라.

²⁰⁵ 2023년 6.4일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실은 29개 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최근 3년간의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감사결과, 12,133개 단체에 지급된 6.8조 보조금 중 314억(0.46%)이 부정사용되었다고 발표하였다.

²⁰⁶ 2023년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각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위다. 부정과부패의 이권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발언하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44>

²⁰⁷ 시민사회 제반 활동 규제 사항 연속 시행. 행안부 기부금품 모집등록업체 ‘검사 협조’ 공문 시달(2023년 6월),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계획(약 25%) 발표(2023년 6월), 행안부 17개 시·도에 내년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2023년 6월), 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제도 개선 권고(2023년 7월), 여당(국민의힘) ‘불법시위단체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규정 복원’ 제안(2023년 7월).

²⁰⁸ 대통령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사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mSgAkqfP>.